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17 |
|----------|-----|

제출연월일 : 2009. 8. 17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문변호사의 구성 수를 확대함(안 제2조).
- 나.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다. 법률고문의 수당제도를 개선함(안 제9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대전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추후 예산에 반영예정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2009. 7. 10. ~ 7. 3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고문변호사는 5인”을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10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변호사”를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문절차) ①법률고문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①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청구에 의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및 승소사례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률고문 수당지급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구 분 | 지 급 액 | 비 고 |
|------|-----------|-------------|
| 정액수당 | 월 25만원 이하 | |
| 추가수당 | 건당 5만원 | 월 5건 초과 1건당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제업무와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 ----- ----- |
| 제2조(구성) ① (생략) ②법제자문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고문변호사는 5인 이내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는 10인----- |
| 제3조(직무) ① (생략) 1. 시 자치법규 제정·개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② ~ ③ (생략) | 제3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4조(위촉) ① (생략) ②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
| 제6조(해촉) (생략)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 3. (생략) | 제6조(해촉) (현행과 같음)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
| 제7조(자문절차) ①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법무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절차) ①법률고문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경영법무담당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 <p><삭제></p> |
| <p>제9조(수당) ①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p> | <p>제9조(수당) ①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청구에 의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p> |
| <p>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및 승소사례금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 <p>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 및 승소사례금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현 행 | | | 개 정 안 | | |
|---------------------------|---|--|---|-----------|----------------|
|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10조 관련) | | | [별표]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 | 내용 | 착수금 | 구 분 | 지 급 액 | 비 고 |
| 민사소송 | 1. 신청사건 · 단순신청 · 본안관련 신청 · 변론이 있는 신청 | 10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경미한 사건 : 중요한 사건 |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 정액수당 | 월 25만원 이하 | |
| | 3. 상고심 | 본안사건 착수 금의 1/2 이내 | 추가수당 | 건당 5만원 | 월 5건 초과 1건당 |
| | 행정소송 | 1. 신청사건 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경미한 사건 : 중요한 사건 3. 상고심 |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상동 민사소송에 준함 | | |
| 기 타 |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 실액 실액 실액 | | | |

| 현 행 | | | | | | | 개 정 안 |
|--|----|----------|----------|----------|----------|----|-------------------|
| (별지 서식) 자문실적부 (년 월) | | | | | | | <u><삭제></u> |
| 구분 종류 | 건명 | 의뢰 일자 | 의뢰 내용 | 회신 일자 | 회신 내용 | 비고 | |
| | | | | | | | |
| <p>※ 종류란에는 입법 제정·개정, 소송사건, 이의신청, 법령해석 등을 기재한다.</p> | | | | | | | |